

# 예산총칙

202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674,176,371	50,225,291
일반회계	1,454,531,945	43,635,958
특별회계	219,644,426	6,589,333
공기업특별회계	162,258,729	4,867,76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9,168,207	1,175,04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1,787,960	1,553,63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1,302,562	2,139,077
기타특별회계	57,385,697	1,721,571
주택사업특별회계	155,955	4,679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5,304,690	159,141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971,120	59,134
교통사업특별회계	20,539,899	616,197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8,966,583	868,997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303,450	9,10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44,000	4,32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443,044천 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7,9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